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51
----------	-------

발의연월일 : 2024. 4. 25.

발 의 자 : 이자스민·양경규·강은미
심상정·강민정·김민석
배진교·장혜영·인재근
도종환·김영주·하태경
한정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시민의 처우·정착지원 및 이민사회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함으로써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의안 번호 제26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인권옹호·출입국관리”를 “인권옹호”로 한다.

제3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시민의 처우·정착지원 및 이민사회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둔다.

⑩ 이주배경시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이주배경시민청장이 각각 승계한다.

1.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9항에 규정된 사무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9항에 규

정된 사무

3.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9항에 규정된 사무
4.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9항에 규정된 사무
5.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9항에 규정된 사무
6.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9항에 규정된 사무
7. 재외동포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9항에 규정된 사무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교육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또는 이주배경시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이주배경시민청
법무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또는 이주배경시민청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이주배경시민청
고용노동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이주배경시민청
여성가족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 또는 이주배경시민청

재외동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 또는 이주배경시민청
-------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이주배경시민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제3조(중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이주배경시민청장의 행위 또는 이주배경시민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주배경시민청, 이주배경시민청장 또는 이주배경시민청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 · 행형 · <u>인권옹호 · 출입국 관리</u>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한다. ② · ③ (생 략)	제32조(법무부) ① ----- ----- <u>인권옹호</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행정안전부) ① ~ ⑧ (생 략) <u><신 설></u>	제34조(행정안전부)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 배경시민의 처우 · 정착지원 및 이민사회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 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둔다.</u> <u>⑩ 이주배경시민청에 청장 1명 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 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u>
<u><신 설></u>	